

##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

의안 번호	399
----------	-----

요구연월일 : 2011년 6월 21일  
요 구 자 : 박운기·한명희 의원 외 54명

### 1. 근거규정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

### 2. 조사의 목적

현재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, 서울항 조성사업, 한강공원특화사업(반포, 여의도, 난지, 뚝섬), 플로팅아일랜드, 여의도요트마리나, 한강투어선건조사업, 한강예술섬조성사업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밝혀내고 관련 사업의 여러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.

### 3. 조사할 사안의 범위

가. 조사대상 기관 : 한강사업본부, 도시기반시설본부, SH공사, 문화관광디자인본부

나. 조사대상 범위

양화대교구조개선사업, 서울항조성사업, 한강공원특화사업(반포, 여의도, 난지, 뚝섬), 플로팅아일랜드, 여의도요트마리나, 한강투어선건조사업, 한강예술섬조성사업 등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사업

-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
- 사업 인·허가과정을 비롯한 사업 진행 절차의 적법성
- 관련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
- 그 밖에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일체의 내용

### 4.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

- 특별위원회